

#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공금관리세칙

[동아리연합회 세칙 제3호] [제정 2019.06.05. / 공포 2019.06.11.]

제정 2019.06.05. <제정>

제 1 장 총칙 .....	2
제 2 장 공금 관리 .....	2
제 3 장 공금 횡령 대응	
제 1 절 통칙 .....	2
제 2 절 진상조사위원회 .....	3
제 3 절 사건 관계자 및 혐의자 .....	5
제 4 절 사후 조치 .....	5
부 칙 .....	5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 1 조(목적)

본 세칙은 중앙동아리의 공금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앙동아리 내부의 투명한 공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(정의)

- ① “공금”이란 중앙동아리 내부의 자체재정 및 중앙동아리가 본회와 학교 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금과 자치회비를 모두 포괄하는 자금을 말한다.
- ② “자체재정”이란 중앙동아리 내부에서 걷은 회비로 이루어진 자금을 말한다.

### 제 3 조(책임자)

중앙동아리 공금 책임자는 중앙동아리의 대표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대표자 외에 별도로 공금 관리자가 있는 경우, 대표자와 해당 관리자가 공동 공금 책임자가 된다.

## 제 2 장 공금 관리

### 제 4 조(의무)

- ① 중앙동아리는 해당 중앙동아리 회원들에게 회계 분기별로 결산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. 단, 회계 분기는 중앙동아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.
- ② 중앙동아리의 공금 감사는 해당 중앙동아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 5 조(운용)

중앙동아리는 공금 운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별도의 계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 3 장 공금 횡령 대응

### 제 1 절 통칙

### 제 6 조(정의)

- ① 공금 횡령은 개인 또는 집단이 중앙동아리의 공금을 사적으로 가로채어 취득하는 일을 의미한다.
- ② 혐의자는 공금 횡령 사건의 피해 발생 주체로 신고되어 지목된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한다.
- ③ 사건관계자는 제보자, 참고인, 증인, 해당 중앙동아리 회원 등 해당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.

### 제 2 절 진상조사위원회

### 제 7 조(진상조사위원회)

- ① 공금 횡령이 의심되어 동아리연합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동아리연합회장단은 신고 후 7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.
-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동아리연합회장단으로 구성된다.
-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학교 당국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사건 발생 중앙동아리, 혐의자, 사건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다.
- 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동안 협력 기관을 제외한 외부에 해당 사건 및 혐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### 제 8 조(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)

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공금 횡령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1. 사건 경위
2. 사건관계자의 진술
3. 사건 증거

## 제 3 절 사건관계자 및 혐의자

### 제 9 조(사건관계자의 권리)

- ① 사건관계자는 신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사건관계자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.

### 제 10 조(사건관계자의 의무)

- ① 사건관계자는 진술을 위증하지 않아야 한다.
- ② 사건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.
- ③ 사건관계자는 혐의자 및 다른 사건관계자에게 보복 및 2차 가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.

### 제 11 조(혐의자의 권리)

- ① 혐의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.
- ② 혐의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신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- ③ 혐의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.

## 제 4 절 사후 조치

### 제 12 조(변제)

- ① 횡령한 공금이 활동지원금이나 자치회비에 해당할 경우 횡령범인은 해당 금액을 7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에 변제한다.
- ② 횡령한 공금이 자체재정에 해당할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사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역할로서 변제 처리에 대한 회의를 주재한다.

### 제 13 조(징계)

① 혐의자의 공금 횡령 혐의가 확정되면 혐의자는 횡령범인으로 자동 전환되며 동아리연합회는 횡령범인에게 아래의 징계를 모두 부과한다.

1. 동아리연합회 회원 자격 영구 박탈
2. 사과문 게시

② 혐의자의 공금 횡령 혐의가 확정되면 해당 중앙동아리의 공금 책임자는 사과문을 게시한다. 사과문 미제출 시 해당 중앙동아리에 주의 1회를 부과한다.

③ 사과문은 혐의 확정 이후 48시간 이내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동아리연합회는 해당 사과문을 동아리연합회가 관리하는 SNS에 게시한다.

### 부칙

본 회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.